

정 관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정 관』

제정 2008.02.27.
개정 2009.03.10.
개정 2010.02.10.
개정 2010.12.17.
개정 2011.02.28.
개정 2012.01.06.
개정 2012.03.15.
개정 2012.05.09.
개정 2012.08.06.
개정 2013.03.20.
개정 2014.02.26.
개정 2015.09.17.
개정 2015.12.22.
개정 2016.12.16.
개정 2017.03.31.
개정 2017.09.05.
개정 2017.12.26.
개정 2018.12.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8.6)

제2조(목적)

진흥원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6)

제3조(소재지)

진흥원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두정동, 진암빌딩)에 둔다.(개정 2012.1.6, 2012.8.6)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8.6)

1.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2.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복지·보호사업(개정 2017.9.5)
 3.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역량개발 지원사업(개정 2017.9.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5. 청소년들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7.9.5)
 6.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고 진흥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확립을 위한 성교육(신설 2017.9.5)
- ②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8.6)

제5조(수익사업)

- ① 진흥원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8.6)
- ② 진흥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8.6)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구분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15인 이내(개정 2010.2.10)
 2. 감사 :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개정 2009.3.10, 2012.5.9, 2012.8.6)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위촉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 ① 위촉직 이사는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자가 된다.
 1. 이사장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 당연직 이사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과장,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개정 2010.2.10, 2011.2.28, 2012.5.9, 2012.8.6, 2014.2.26, 2015.9.17, 2017.12.26)
- ③ 감사 2인 중 1인은 충청남도 청소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2.28, 2012.8.6)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장은 위촉직 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 질병, 기타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이사회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이사 내지 감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개정 2012.8.6)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개정 2012.8.6)
 4.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4.7)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8.6)
- ② (삭제 2009.3.10)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8.6)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진흥원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개정 2012.8.6)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에 대한 이사회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2.28)
- ② 이사장·여성가족정책관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2.28)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

-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2.8.6)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감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회의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0.12.17)

제1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4조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결의사항을 제1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3.31)
-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5. 직제·정원, 인사, 임금, 복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1)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8.6)

제19조(이사회 의결에 대한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일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8.6)
 - 1. 기본재산 : 출연금, 적립금 등 진흥원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 2. 보통재산 : 제1호 이외의 모든 재산
- ② 이사장은 연1회 진흥원의 기본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8.6)

제22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8.6)

- 1. 국가 및 도,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 2. 청소년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 3. 사업수익금 및 개인 기부금
-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등

제23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8.6)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진흥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8.6)

제25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제26조(순세계잉여금)

- ①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순세계잉여금을 제1항의 목적사업비와 부득이하게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잉여금 규모를 추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제27조(계속비)

진흥원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28조(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대여금지)

- ①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2.8.6)
 1. 진흥원의 임원
 2. 진흥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진흥원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2.8.6)

제30조(회계감사)

진흥원에 대하여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5장 조직 및 인력관리 (개정 2016.12.16)**제31조(조직 및 인력운영) (개정 2016.12.16)**

- ① 이사장의 명을 받아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를 집행하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둔다.(개정 2016.12.16)
- ② 조직에는 원장 1인, 기타 필요한 조직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8.6, 2016.12.16)
- ③ (삭제 2016.12.16)
- ④ 진흥원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8.6, 2017.3.31)
- ⑤ 직원의 인사, 임금,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3.31, 2018.12.21)

제32조(원장) (개정 2012.8.6)

- ① 이사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에 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7.9.5)

-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9.5)
- ③ 원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 2. 진흥원 제반업무의 수행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개정 2017.3.31)
 - 3.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진흥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33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 ① 이사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도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직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2.10, 2012.1.6)

제35조(진흥원의 해산) (개정 2012.8.6)

- ① 진흥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2.4, 2012.3.15)
- ② 진흥원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한다.

제36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8.6)

제38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개정 2010.12.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8.6)
- ②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제2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이 정관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한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개정 2012.8.6)

제5조(기본재산)

기본재산은 [별지 제2호]와 같다.(개정 2012.1.6)

제6조(제규정의 법인·직위명칭 변경)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법인·직위 명칭은 정관에서 법인명칭 및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 규정의 법인 명칭과 직위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8.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설립발기인 기명 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최민호	(인)	이사장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인)	이사
충청남도의회	의 원	황우성	(인)	이사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승규	(인)	이사
충남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관	정양신	(인)	이사
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장	이길영	(인)	감사

[별지 제2호]

기본재산목록

재산 별(용도별)	수 량(평)	평 가 액	비 고
출 연 금	1식(현금)	300,000,000원	충청남도 출연
출연금 이자분	1식(현금)	12,419,345원	2010년 이자분
출연금 이자분	1식(현금)	10,478,554원	2011년 이자분
출연금 이자분	1식(현금)	10,178,430원	2012년 이자분
출연금 이자분	1식(현금)	9,166,260원	2013년 이자분
출연금 이자분	1식(현금)	8,139,871원	2014년 이자분
총계		350,382,460원	

(개정 2012.1.6, 2012.3.15, 2013.3.20, 2014.2.26, 2015.4.7)